

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제24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분한다.

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마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1년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(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해상교통안전이나 사설항로표지 소유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위탁관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- 5) 위반 행위자가 항로표지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바.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그 처분이 등록취소(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
- 1)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

인정되는지 여부

-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
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	법 제26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
나.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업의 등록증 을 빌려준 경우	법 제26조 제1항제2호	등록취소		
다.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신 규로 체결한 경우	법 제26조 제1항제3호	등록취소		
라.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 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. 다만,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26조 제1항제4호	영업정지 1개월	등록취소	
마. 법 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 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 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26조 제1항제5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
바. 법 제23조제2항 각 호(법 제24조제4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 제26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.	법 제26조 제1항제6호	등록취소		
사.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의 개시,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업을 개시, 휴업하거나 재개한 경우	법 제26조 제1항제7호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6개월	등록취소
아.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26조 제1항제8호	시정명령	등록취소	